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52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허위조작정보 정의	7
3. 허위조작정보 유통죄	10
4.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17
5.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20
6.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3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6. 12.

다.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 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최근 대선 관련 인터뷰 조작 논란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2016헌마275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 그럼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현행 법체계는 언론사의 허위보도만을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하거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및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문	주요내용
제2조제1항제14호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제44조의4제2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
제44조의11	- 매크로를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게재 금지 -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노력 의무 - 권리침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
제44조의12, 제64조의5제1항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 허위조작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제73조제5호의2, 제74조제1항제3호의2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제76조제2항제4호의5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미지정에 대한 과태료

-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2023년 제정된 ‘디지털서비스 법(DSA)’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별적 콘텐츠 등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신고 창구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은 2017년 제정된 ‘소셜 네트워크에서 범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¹⁾에게 위법한 콘텐츠²⁾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심사 및 이의제기 처리,

1) 임의의 내용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신미디어서비스 제공자(법 제1조 제1항)

2) 위법한 콘텐츠에는 공연한 범죄선동, 범죄위험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범죄의 대가 지급 및 찬양, 모욕·비방·중상,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 등이 포함되며, 가별성 있는 허위조작정보도 위법한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음.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한 바 있으며³⁾⁴⁾,

- 프랑스는 2018년 제정된 ‘정보조작대처법률’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짓정보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민사 가처분 제도, 거짓 정보 유포 대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의무, 고등 시청각위원회(CSA)의 거짓정보 대처 권고 권한 및 의무이행 관련 조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
-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애 앞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3) 박희영, ‘독일의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최신외국법제정보” Vol.4., 한국법제연구원, 2018.

4) 다만 네트워크집행법은 2024년 5월 폐지되었으며, EU DSA에 따른 ‘미디어서비스법’이 제정되어 네트워크집행법의 법률 조항 다수가 이에 통합됨.

(이유진, ‘네트워크집행법 대체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더 이상 책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플랫폼 : 독일’, “신문과 방송” 통권 632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5) 한동훈,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의 합헌성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153호, 언론중재위원회, 2019.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계속 변화하는 허위조작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성 규제보다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기반으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정안에 따른 의무가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불균형에 따른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허위조작정보 정의(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허위조작정보”란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고의성이 없는 ‘오정보(misinformation)’와 달리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하여

조작된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정안의 정의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짓·왜곡된 정보임을 알지 못하고 유통한 경우까지 규제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대책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회혼란 야기, 경제적 이익 등 목적을 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게재자가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했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의 정의 중 거짓, 왜곡 등 불명확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경제적·정치적 이익 추구의 목적’ 또는 ‘타인을 속이기 위한 고의’ 등 범위를 한정하여 선의의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서 ‘거짓’, ‘왜곡’, ‘사실관계의 오인’ 등 그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참고로,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다음과 같음.

<제21대 국회 유사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정의>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정의
정필모의원안 (제2100815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사실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
서영교의원안 (제2107093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김종민의원안 (제2115428호)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변형·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
윤두현의원안 (제2124795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

3. 허위조작정보 유통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 제1항 제10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생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4. 허위조작정보</u>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	② ----- ----- <u>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u> ----- ----- -----

현행	개정안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4. (생략) ② (생략)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u> <u>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에</u> <u>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u> 11.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⁶⁾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이러한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가능함⁷⁾.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 이용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를 그 목적 및 구체적 법익의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 중에는 정치적 · 경제적 이익의 획득, 타인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으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손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도 존재함.

○ 그런데 구체적인 법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임.

-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미네르바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이 있었음⁸⁾.

8)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

○ 참고로 현행법상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유사 형벌규정을 보면,
남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⁹⁾.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둘째, 유사한 형벌규정과 비교했을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 아닌지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할 때에는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
져야 함¹¹⁾.

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 ‘허위사실의 표현’이 일정한 경우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9)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
자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¹²⁾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허위 통신의 목적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과 달리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범죄행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 ② 구체적 법익 침해가 없음에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만으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불법정보 제도로 규율하기보다는 허위조작정보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헌재 2018.12.27. 2017헌바195 등)

12) 제47조(벌칙)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①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할 때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공론장의 위축효과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 ②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에 대한 처벌규정 및 후술할 매크로를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등 유사 위반행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4.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안 제44조의4제2항제3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2항 제3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생략)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허위조작정보</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제2항¹³⁾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제1호) 및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제2호)의 유통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임.
- 다만, 앞서 논의한 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4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동 정보는 현행 제4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면 이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현행법상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 조항을 별도로 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13) 제44조의4(자율규제)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 한편,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책규정에서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일부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KISO 정책규정>

제5장 그 밖의 특별 정책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제33조(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 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4조(게시물 제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이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이용자의 의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11제1항).
 - 매크로를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 (권리침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 (권리침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및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4항),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이행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노력 의무 및 권리침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에 대한 조치·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의무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현행	개정안
	<u>노력하여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현행	개정안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u>⑦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3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44조의11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u>

현행	개정안
6. ~ 8. (생략)	<u>행하지 아니한 자</u>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 8.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제74조(벌칙) ① -----
<u><신설></u>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u>
	<u>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이용자의 의무 관련

- 안 제44조의11 제1항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위에서 논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매크로를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것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더라도 매크로를 이용하여 유통한 경우 일반적인 유통에 비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매크로를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죄질이 유사하고 다만 유통의 방법에만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법정형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매크로 사용 의도와 관계없이 모든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 등으로 금지행위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② 매크로를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게재뿐만 아니라 조회수·추천수·검색순위 등 조작도 금지행위에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③ 매크로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매크로 이용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의 경우,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비교하였을 때 후자의 형량이 훨씬 높다는 모순이 있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¹⁴⁾ 등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이므로, 안 제44조의 11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개 정 안	과기정통부 수정의견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u>반복·입력</u>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① ----- ----- ----- <u>반복 입력</u> ----- ----- -----.
② ~ ⑦ (생략)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1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2)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 의무 관련

- 안 제44조의11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히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89헌가104).
- 그런데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4조의11 제6항),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안 제73조 제5호의2),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어떠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안 제44조의11 제2항 노력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안 제44조의11 제6항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및 의무 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노력’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의무가 적용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안 제44조의11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안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허위조작정보 삭제등 조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안 제44조의11 제2항의 의무자 범위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는 경우 위 조문들의 의무자 범위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의 경우,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노력의무 등에 대한 행정상 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¹⁵⁾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명령 및 벌칙을 규정한 것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거짓 또는 왜곡 여부를 개인 또는 사업자가 판단할 수 없고,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경우는 사적 검열에 해당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해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3) 권리침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 관련

- 안 제44조의11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과 별개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제4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16)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와 관계없이 현행 제44조의3에 따라 임의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므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도 임의의 임시조치는 허위조작정보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정보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규정 신설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규정하는 경우 임시조치 남용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4) 권리침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및 조치 관련

- 안 제44조의11 제4항은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등(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¹⁷⁾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5항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단서생략)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범위를 권리침해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상 유사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권리침해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확산됨에 따라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한 것임.

<안 제44조의11 제4항·제5항과 현행 제44조의2 비교>

구분	안 제44조의11 제4항·제5항	현행 제44조의2
조치대상 정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
신청인	<u>제한 없음</u>	<u>권리침해를 받은 자</u>
삭제등 요청의 요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 반면 안 제44조의11 제4항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현행 제44조의2와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침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삭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나 본인의 권리침해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삭제 등 요청의 남발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는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 당사자가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6.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안 제44조의1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의 지정
(안 제44조의12)
 -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허위조작정보 처리에 관한 보고서
(투명성 보고서) 제출(안 제64조의5제1항)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2항 제4호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

현행	개정안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u>불법촬영물등의</u>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	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 ----- ----- ----- -----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 ----- -----

현행	개정안
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②·③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신설>	----- ----- -----. 1.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 ----- 2. 3. (현행과 같음) 4. -----책임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5.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 6. 허위조작정보의 임시조치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⁸⁾.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2항제4호의4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8)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법 제64조의5에 따라 매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¹⁹⁾.

-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 제3항제2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개정안은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허위조작정보 관련 업무처리 및

19)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작성 ·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주로 사진 · 동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자와 허위조작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자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둘을 서로 다른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²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과 허위조작정보가 그 성질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두 가지 정보의 전과 양상 등 특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유형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형평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되고 장기간 개인의 인격권에 대해 복구하기 어려운 중대한

2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1의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비고: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가. 「민법」
나. 「상법」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팩트체크 및 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30